

- 가. 재난관리 업무 총괄
- 나. 재난 피해복구 대민지원 조정·통제
- 다. 재난관리 분야의 정부부처 협조
- 라. 타 국실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관리 업무 조정·통제
- 2. 국방교육정책관
  - 가. 재난발생 지역의 교육훈련 조정·통제
  - 나. 교육·훈련 간 산불예방 대책 수립 및 조정·통제
  - 다. 군수관리관실에서 교육기관(신병 및 학교교육)에 재난 및 안전 예방교육 요청시 반영 조정·통제
- 3. 보건복지관
  - 가.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기능 마비 시 의료지원 대책 수립
  - 나. 감염병 확산 시 의료지원
  - 다. 군내 감염병 대책 수립 및 시행
- 4. 군사시설기획관
  - 가. 수질오염 등 환경재난 발생 시 급수대책 및 사후관리
  - 나.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·통제
- 5. 동원기획관
  - 가. 「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」 제35조의 재난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위한 예비군 동원
  - 나. 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조정·통제
- 6. 정보화기획관
 

정보통신 분야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통신망 복구 지원에 관한 조정·통제
- ② 합참 및 각 군의 재난관리 임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합참
    - 가. 남·북 군사분계선지역(DMZ) 산불 관리 및 조정·통제
    - 나. 산불발생 시 진화 및 지원을 위한 작전대기 헬기 투입 및 타지역 병력 전환 운용 시 조정·통제
    - 다. 화학 유해물질, 방사능 유출 등 화생방 재난 시 지원
    - 라. 지휘통제실을 통해 접수된 군내 재난피해, 부대 대피, 민간에 대한 구조 지원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 재난상황실로 통보
    - 마. 탐색구조본부의 구성·운영 및 탐색구조부대의 지정·운영
  - 2. 각 군 본부
    - 가.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
    - 나. 소속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
    - 다. 재난 피해복구 대민지원
    - 라. 공군본부(공군기상단)는 재난관련 기상정보 자료 제공

**제5조(재난관리 집행계획의 수립)** ① 국방부장관은 "재난관리집행계획 작성 지침"을 수립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.

-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속 군의 다음 연도 「재난관리 세부집행계획(이하 "세부집행계획"이라 한다)」을 작성하여 1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'세부집행계획'에는 풍수해, 지진, 지진해일, 산불, 감염병 등 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'재난유형별 안전관리 대책'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, 재난유형별로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'세부집행계획'을 토대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다음 연도의 「국방부 재난관리 집행계획(이하 "집행계획"이라 한다)」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한다.
- ⑤ 국방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'집행계획'을 각 군에 시달한다. 다만, '집행계획'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연도의 '집행계획'을 적용한다.
- ⑥ 각 군은 제5항의 '집행계획'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## 제2절 재난관리 기구

**제6조(재난대책본부 등)** ① 군 재난관리 및 대민피해복구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, 각 군 및 직할기관에 재난대책본부를 둔다.

- ② 제1항의 재난대책본부는 육군의 경우 독립연대급 이상, 해군의 경우 전단(대)급 이상, 공군의 경우 독립전대급 이상, 직할기관은 독립적으로 주둔한 부대단위로 둔다.

③ 국방부 본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군수관리관이 되며, 국방부 본부,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필요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7조(재난대책본부의 기능)** ① 재난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 피해복구 및 대민피해복구 지원의 조정·통제
  2. 병력·장비의 대피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지시
  3.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구와 협조
  4.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
  5. 그 밖에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한 기관에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.
- ③ 국방부를 포함한 각 제대별 재난대책본부는 재난발생 시 정보공유, 연락관 파견,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협력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등한 수준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한다.
1. 국방부(군수관리관실)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국민안전처), 그리고 국방부 및 합참의 그 밖의 관련부서는 각 재난별 중앙사고수습본부(유형별 주관부처)
  2. 군사령부, 작전사령부, 군단급 이상 부대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 및 대등한 지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
  3. 단급(사단·함대사·비행단) 부대는 시·군·구, 그 밖의 부대는 대등한 지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

**제8조(재난대책본부 운영 기준)** ①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일선 지역부대(연대 또는 전대급)의 재난대책 단계별·재난유형별 대책본부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재난대책(비상) 1단계
  - 가.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‘주의보’ 발령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
  - 나.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4.0~4.9(해역은 4.5~5.4)의 지진발생 통보지역 또는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 위치한 부대
  - 다. 정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 수준이 ‘주의’ 또는 ‘경계’ 인 경우에 재난발생 또는 예상지역에 위치한 부대
  - 라.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
2. 재난대책(비상) 2단계
  - 가.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‘경보’ 발령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
  - 나.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.0 이상(해역은 5.5이상)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된 지역에 위치한 부대.
  - 다. 정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 수준이 ‘심각’ 인 경우에 재난발생 또는 예상지역에 위치한 부대
  - 라.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
3. 재난대책(비상) 3단계
  - 가.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‘경보’ 가 발령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
  - 나.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.0 이상(해역은 5.5이상)의 지진이 발생하였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
  - 다.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
4. 위의 각호 가의 기준은 태풍·호우·대설 시에 적용하고, 그 밖의 상황의 경우에는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각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대의 상급부대(국방부 본부 포함)는 기상특보, 유관기관의 위기경보 및 지원요청, 예하부대의 재난대책 단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. 각 부대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상급부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제2항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예하부대의 재난대책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)** ①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 장교 또는 서기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군 본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급 장교로 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 본부,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직원을 증원하여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재난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인원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